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 의 안 검 토 보 고

2012년 5월 16일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은 모

#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 결 의 안 검 토 보 고

### 1. 안건명

-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5월 8일(火), 이필례의원 외 17 인

###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2년 5월 16일(水)

###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철회시키 고자 함.
-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21년간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을 거듭하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여 왔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구심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음.

-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개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지방자치의 근간과 관련된 이러한 중대 사안이 국민의 충분한 사전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개편추진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 졸속적으로 처리된 것은 민주주의 제도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러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독단적 결정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제도를 뿌리 채 뽑아 버릴 수 있는 반민주적,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이에 마포구의회에서 국민적 합의가 없는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므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와 해당 군의회와 연합하여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결사적으로 구의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함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찾고자 하는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 됨.